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올림픽대회 용어 정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범위 확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20호)

2025.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장애인올림픽대회 용어 정비 ····· 3

2.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범위 확대 ····· 5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11. 7.

3. 회 부 일: 2025. 11. 1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같은 도시에서 함께 열린 최초의 대회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공동 이용’, ‘성화봉송 참여’ 등 수많은 혁신적 사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패럴림픽은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연 대회”로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서울올림픽만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패럴림픽의 정신을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과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체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안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올림픽대회 용어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인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8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7. (생 략)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u>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u>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 <u>서울패럴림픽대회를</u>---------- 9.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장애인올림픽대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1])가 주최하는 대회로, 1989년 IPC가 설립된 이후 패럴림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IPC는 패럴림픽대회 참가 가능 장애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2], 장애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혼용하는데 따른 혼란 방지 등을 고려할 때 대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과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던 이름을 공식명칭에 맞춰 법률의 제명을 변경한바 있음[3].

1)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2) 지적장애인은 스페셜올림픽대회로, 농아인은 데플림픽대회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3) 법률 제14198호, 2016.5.29. 일부개정

2.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 1. ----------기념사업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의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육단체[4]로서 제24회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단체임.

-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기념사업으로 서울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기념관 등 서울올림픽 기념시설 관리·운영과 서울올림픽레거시 확산을 위한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을 수행하고 있음[5].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과 달리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수행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현재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을 위한 별도의 사

---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5) 참고자료: 올림픽레거시 확산 사업 개요 참고

업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사업수행주체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상 규정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6].

- 다만, 사업수행주체와 관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예산, 인력, 업무역량 측면에서 패럴림픽 기념사업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식명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공단의 목적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도 전담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그 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에 대한 미비 규정의 보완을 통해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6)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4.))에서도 서울 올림픽대회와 같이 서울 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올림픽레거시 확산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레거시 관리주체, NOC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서울올림픽레거시의 우수성 글로벌 전파
- 글로벌 아젠다인 “스포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올림픽 운동을 서울올림픽 레거시가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위상 강화

○ (**주요내용**) 환영리셉션, 토론세션, 부대행사 등

○ (**참석대상**) IOC, NOC, 체육계(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학회, 체육기자연맹 등), 스포츠산업 관계자, 레거시 관리주체 등

○ (**주최/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 문화체육관광부 등

○ (**소요예산**) 기금 200백만원(’25년) → 180백만원(’26년)

○ (**주요성과**)

- (’22년) 125년 올림픽 역사 최초의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개최(19개국 491명 참석)
- (’23년)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성과의 글로벌 전파 및 개최 정례화
- (’24년) 서울올림픽레거시의 글로벌 확산 및 위상 강화